

## 이라크

# 투자정세에 관한 보고서

## 1. 서론

### \*이라크- 전도유망한 투자기회의 중심지

이라크는 석유, 가스와 같은 자연자원과 인적자원과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제공하여 외국인자본과 투자를 국내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라크는 대규모 국내시장과 지리학적 위치로 생산과 수출입의 거점이 될 수 있었으며, 다양하고 매력적인 요인을 갖추어 여러 경제분야의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현재 이라크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철학의 변화로 인하여 「2006년 제13호 투자법」에 명시한 이라크가 지향하는 목표와 그 이유가 투자장려에 적잖이 기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라크는 국외의 기술과 과학적 경험을 수용하고 투자사업의 설립, 확장, 개발과 이 사업에 제공하는 특혜와 혜택에 주력하였다. 또한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이라크 내 외국투자유치 및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들이 속속 입안되었고, 외국투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형태로 보장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모든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혜택과 보장이 제공된다:**

-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간 세금면제
- 이라크투자자참여비율 증대 시 면세기간을 15년까지 연장
- 필요 시 외국인력 고용
- 투자사업을 위하여 수입한 재산에 대하여 3년간 관세면제
- 투자법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사업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적인 몰수 또는 국유화금지보장
- 외국인투자자는 이라크와 자국 간 양자협약 또는 이라크가 가입한 다자간 협약에 따라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라크정부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경제를 재건하여 모든 국민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
- 도로, 다리, 주택과 모든 인프라 재건
- 수자원과 에너지원 재구축
- 유전, 가스전, 송유관, 정제소, 석유파생산업공장 개발

현재 이라크 내 지속되고 있는 안정으로 이러한 목적과 장기간의 사업은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의 지속적인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요인은 다음과 같다:**

- 치안상황의 개선으로 외국인투자의 적합한 분위기와 환경을

-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 강력한 정부와 안보군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라크에서 실시한 성공적인 선거로 점차적으로 민주주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 경제적인 안정과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균 연간성장률이 증가하였다.

지난 30년 이상 이라크경제에서 민간부문의 투자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라크경제는 개방경제로 접어들어 비즈니스와 투자가 가능하고 이것은 높은 성장으로 나아가는 견인차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라크정부는 지금도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 2. 이라크 경제지표

이라크경제는 경제부문 별 인프라 뿐 아니라 자연자원, 인적자원 등 매우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투자에 매력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이는 다음의 각종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 \*석유부문

- 석유는 90%를 선회하는 수익을 내면서 이라크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유생산량의 긍정적인 성장과

유가상승으로 이라크정부는 건설부문에 투자 확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주요 경제수익으로 수입을 통하여 국내소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고로, 석유는 이라크 주요 경제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 발굴된 이라크유전은 71곳이며, 그 중 27곳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으며, 10곳은 대규모의 유전이다.

### 3. 투자환경

#### \*2006년 제13호 투자법

이라크정부의 민간부문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제13호 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6년 10월 내각에서 승인하였고 2007년 1월부터 석유와 천연가스생산 및 채굴분야와 은행 및 보험부문 외 모든 부문에서 시행되었다. 이 법의 규정에 적용되는 사업자본의 최소한도는 25만US달러 또는 이 금액에 상당한 이라크디나르이다. 이 법의 제1호 개정법에서 보장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에게 주택사업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토지소유 허용
- 공사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쉽 체결 시 투자법혜택 적용
- 행정구역 외 지역의 투자위원회에 법인격을 허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함
- 투자사업할당목적으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수집하여 투자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

**\*2006년 제13호 투자법과 그 개정안에 명시한 주요 혜택과 보장:**

- 외국인투자자는 이라크정부와 그 밖의 기관에서 부과한 모든 세금과 채무를 지급한 후 이라크중앙은행의 지침에 따라 이라크에 반입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라크에서 취득한 수익도 회수할 수 있다.
- 사업을 목적으로 수입한 재산에 대한 면세
- 투자자의 자본과 수익금 송금
- 필요 시 외국인력 고용
- 투자사업의 몰수 또는 국유화 금지 보장
- 투자사업에 대하여 이라크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체결권부여
- 이라크은행과 외국은행에 이라크통화 및 외국통화로 계좌 개설
-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이라크 거주권 허용 및 원활한 입출국 허용
-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이라크금융시장(ISX)의 주식 및 채권유통허용
- 호텔, 관광시설, 병원, 의료시설, 오락시설, 교육시설에 대하여 최소 4년마다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수입한 자재와 필수품 수입비용에 대한 추가면세 허용
- 투자자에 대하여 사업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연장이 가능한 50년간 임차
- 사법판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를 취득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몰수 또는 국유화 금지

- 투자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이라크정부와 그 밖의 모든 이라크당국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세금과 채무를 지급한 후 자신의 보수와 보상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차후의 이 법에 대한 모든 별도의 개정규정은 상기 명시한 보장과 혜택에 대하여 소급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투자위원회 설립**

「2006년 제13호 투자법」에 따라 국가투자위원회(NIC)와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PICs)가 설립되었다. 투자법은 각 지방과 행정구역의 투자를 관할하는 투자위원회설립을 허용하였으며, 각 투자위원회는 투자허가발급, 투자계획, 투자육성에 대한 권한이 있고, 국가투자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지역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제2호 투자규칙」은 국가투자위원회의 업무를 지정하고 그 조직을 구성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권한을 지정하였다.

### **\*국가투자위원회가 관할하는 전략사업**

국가투자위원회는 이라크전반의 국가투자전략과 정책입안을 관할한다. 위원회는 지정한 정책시행에 필요한 계획과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시행을 감독한다. 또한 「2009년 제2호 투자규칙」에 지정한 바에 따라 연방전체에 걸친 전략적 사업을 관할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 자본금이 5백만달러 또는 이 액수에 상당한 이라크디나르 이상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
- 행정구역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지역 간 공동사업
- 투자법 제29조에 명시한 바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자연자원발굴에 관한 사업
- 이라크가 가입한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사업
- 자본금이 5백만 달러 또는 이에 상당한 이라크 디나르 이상인 건축, 광물, 석유화학에 관한 사업
- 유적지개발사업
- 자본금이 3백만US달러 또는 그에 상당한 이라크디나르 이상인 도로, 항구, 공항, 철도와 같은 운송사업
- 생산량이 30메가와트 이상인 전력사업
- 통신사업
- 내각이 지정한 그 밖의 사업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상기 명시한 바 외에도 각 행정구역 내 투자위원회권한이 적용되는 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총체적으로는 투자, 특히 주택사업을 장려하고 투자자가 이라크에서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국가의 부동산과 토지를 임대하고 이를 통한 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국가의 지분을 지정하기 위하여 「2010년 제7호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이 공포되었으며, 이 규칙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투자위원회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토지를 무료로 소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토지가액은 내국인에게 매각된 주택단지에 포함하여 기산하지 아니한다.
- 국가투자위원회 산하에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2억5천만US달러 이상의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와 부동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한다.
- 국가투자위원회는 주거단지, 오락시설과 그 밖의 시설목적에 관련한 주거도시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한다.
- 토지임대료지급일자는 사업개시일부터 시작된다.

## 4. 투자자의 의무

국가투자위원회는 투자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투자허가를 발급한다. 투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다음의 문서를 포함한다:

- 위원회가 지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허가신청서
- 은행보증서
- 투자자가 이라크 내외에서 이행한 사업보고서
- 투자자가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과 경제계획서
- 사업완성일까지의 기간상의 일정표

## 5. 투자허가발급서비스

국가투자위원회 내 통합서비스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의 기관을 통하여 투자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 **투자기회위원회:**

국가투자위원회 내 담당부서와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전략사업과 중소규모의 사업에 대한 투자기회목록을 제공한다.

**\* 물류 및 편의지원**

투자자는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투자자에게 시장조사와 경제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
2. 투자자에게 경제기술기획연구를 담당하는 센터와 자문기관을 통하여 자문을 제공받도록 지원
3. 외국인투자자가 원활하게 이라크에 입국하고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편의 제공
4. 투자자가 이라크도시와 인적자원과 자연자원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부문별 기관의 동의취득**

투자자가 법적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한 투자제안과 기술 및 재무상의 계획안검토에 대한 각 부문별 기관의 동의를 취득한다.

출처: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www.investpromo.gov.iq](http://www.investpromo.gov.iq))